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곽향기, 김길영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
남창진, 박상혁, 박영한,
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숙자, 이종태, 이희원,
최민규, 최윤희, 최진혁,
허·훈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'경관 자원'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·보전·활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(도시숲 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제8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